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4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정점식 · 박충권 · 김태호  
성일종 · 신성범 · 고동진  
서천호 · 김성원 · 엄태영  
김정재 · 백종현 · 구자근  
강대식 · 김승수 · 김용태  
의원(15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식수 확보 및 물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지역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의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 9.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u></p> <p>6. ~ 9.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4(식수 확보 및 물관리)</u></p> <p><u>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지역 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u></p>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의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빗물이용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